

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0. 18 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10. 25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10. 25(화) 제124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 10. 25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학근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·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 연구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,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향토음식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 (안 제3조 내지 제6조)
-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, 발굴육성 (안 제6조,제7조)
- 향토음식연구회 구성 및 연구활동 전개 (안 제9조, 제10조)
-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위탁업무 실시 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전통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, 세계화를 시키고자 향토 음식의 발굴·육성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개발 연구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

나. 안 제7조(육성 보호) 3과 안 제12조(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)의
 행·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방법, 규모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
 부분임

다.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향토음식 육성에 대한 위원회를 이원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?	○ 심사의 목적을 위한 위원회와 연구를 목적으로 한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○ 타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지정한 향토 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대책은 ?	○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할 계획임.
○ 안 제7조의 처벌이나 제재대책은 ?	○ 이 또한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할 계획임.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.

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10월 25일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가. "향토음식심의회"와 "향토음식연구회"라는 이원화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당면하게 될 업무추진의 어려움에 대하여 사전 이를 예방하고자 향토음식심의회로 통합 운영하게 하여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
- 나.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가. 안 제3조 제2항의 5 삽입
- 나. 안 제8조중 "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수정
- 다. 안 제9조 1항중 "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·개발·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"를 "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·개발·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단체를 둘 수 있다."로 수정
- 라. 안 제9조 2항을 삭제하고
안 제9조 2항 "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."를 신설하고

안 제9조 3항 "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"를 신설한다.

마. 안 제10조를 삭제한다.

바. 안 제11조를 "안 제10조"로 하고,

안 제10조중 "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를 "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로 수정

사. 안 제12조를 "안 제11조"로 수정

아. 안 제13조를 "안 제12조"로 수정

자. 안 제14조를 "안 제13조"로 수정

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10월 25일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"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"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가. 안 제3조 제2항의 5 삽입한다.

나. 안 제8조중 "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수정한다.

다. 안 제9조 1항중 "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·개발·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"를 "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·개발·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단체를 둘 수 있다."로 수정한다.

라. 안 제9조 2항을 삭제하고

안 제9조 2항 "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."를 신설하고

안 제9조 3항 "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"를 신설한다.

마. 안 제10조를 삭제한다.

바.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를 "안 제10조 내지 제13조"로 하고,

안 제10조중 "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를 "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</u></p> <p>제3조(향토음식심의회) ①~② (생략) 1. ~ 4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8조(명칭사용의 금지)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<u>이와 유사한 명칭</u>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9조(향토음식연구회)①군수는 향토 음식의 발굴·개발·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<u>평창군향토음식 연구회(이하 "연구회" 라 한다)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0조(연구회 구성 등) ①~⑤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</u></p> <p>제3조(향토음식심의회) ①~② 원안과 같음 1. ~ 4 (원안과 같음) <u>5. 기타 향토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8조(명칭사용의 금지) ----- ----- ----- <u>명칭</u>을 -----.</p> <p>제9조(향토음식연구) ①----- ----- ----- <u>향토음식연구단체</u>----- -----.</p> <p><u>②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수당 등)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<u>수당·여비 등의 실비</u>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0조(수당 등) 제3조----- -----<u>심의회</u>의 <u>참석수당</u>은 ----- ----- ----- <u>실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) (생략)</p>	<p>제11조(음식연구전문기관 설립지원)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연구업무의 위탁) (생략)</p>	<p>제12조(연구업무의 위탁) 원안과 같음</p>
<p>제14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원안과 같음</p>